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20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모경종·김 윤·이광희

김우영 · 김한규 · 김교흥

남인순 • 이재강 • 김원이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 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 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제2조제6항 삭제).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u><</u> 삭 제>
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